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063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:이숙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

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유만희, 이상욱, 이종환, 최민규, 허 후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조례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,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'을 '노동기본계획'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(안 제5조 제4항)
- 나. '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'를 '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감정 노동 분과위원회'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(안 제18조 제4항)
- 다.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(안 제19조제3항 신설).
- 라.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삭제(안 제18조, 제19조)

마. 위원회 운영을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(안 제 19조제5항 신설)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1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 보호위원회에 감정노동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
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7항) 중 "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"을 "노동정책담당관"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, 심의 ·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조(서울시 등 감정노동 종사자 제5조(서울시 등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) ① ~ |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④ 시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 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 제18조(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 제18조(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 리보호위원회의 설치) ① (생 리보호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략) 같음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 제3 -----. <후단 삭제> 항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을 각 3 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본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 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감정노동 로 한다.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

게 할 수 있다.

-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<삭 제>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- 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9조(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) ① 제19조(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) ① · ② (생 략)
 -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 분하며,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 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

- ·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 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 다.

<삭 제>

한다.

-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 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<신 설>

<삭 제>